#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44

발의연월일: 2024. 8. 12.

발 의 자: 강대식 · 강승규 · 박상웅

송언석 · 최은석 · 김예지

배준영 · 김소희 · 강선영

권영세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공항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되,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항공운임 및 사용료 일괄부과를 위하여 항공권판매자가 사용료징수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용료가 포함된 항공권을 구매하였으나 항공기 미탑승으로 공항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가 사용료를 반환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사용료를 제대로 반환받지 못 하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위와 같은 미반환 사용료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용료의 귀속주체는 공항 등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운영자가 됨이 타당함에 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의 미비로 사용료 징수의 업무대행자인 항공권판매자가 미반환 사용료를 권원 없이 취득하여 국가재정의 손실을 발

생시키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사용료가 포함된 항공권을 구매하였으나 항공기 미탑승으로 공항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가 사용료의 반환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5년 이내에 반환 청구가 없는 사용료 는 국고에 귀속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항 등 시설이용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재정의 손실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등).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대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7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 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 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사용 또는 이용하려는 자"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항공권을 판매하는 자로서「항공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항공권판매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2조의2(사용료의 반환청구 등) ①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였으나 공항·비행장·항행안전시설을 예정대로 사용 또는 이용하지 아니한 자는 해당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제3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항공권판매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9조제1항제2호의2에서 같다)에게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청구권은 공항·비행장·항행안전시설의 사용 또는 이용이 예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며, 그 사용료는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따

른 교통시설특별회계 중 공항계정(이하 "공항계정"이라 한다)에 귀속된다.

- ③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제2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 용료의 반환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해당 사용료를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제2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용료를 공항계정에 귀속시 키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법률 제20291호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 제55조제1항 중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업무 수행단체 또는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을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 또는 제3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항공권판매자"로 한다.

제69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3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사용료의 반환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해당 사용료를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미리 통지하지 아니한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항·비행장·항행안전시설을 예정대로 사용 또는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미반환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 10년 전부터 이 법 시행 당시까지 반환되지 아니한 사용료(이하 "미반환 사용료"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미반환 사용료를 징수한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3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했던 자에게 반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32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공 제32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 리 · 운영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항 ·비행장·항행안전시설을 사 ----사용 또 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는 이용하려는 자-----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후 ----- 이 경우 단 신설>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항공권을 판매하는 자로서 「항공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항 공권판매자"라 한다)에게 대행 하게 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2조의2(사용료의 반환청구 등) ①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를 납부하였으나 공항ㆍ비행장 ·항행안전시설을 예정대로 사 용 또는 이용하지 아니한 자는 해당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 설을 관리・운영하는 자(제32 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항공권판매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9조 제1항제2호의2에서 같다)에게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 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청구권은 공항·비행장·항행안전시설의 사용 또는 이용이 예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며, 그 사용료는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따른 교통시설특별회계 중 공항계정(이하 "공항계정"이라 한다)에 귀속된다.

③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제2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기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해당 사용료를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시설

법률 제20291호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

제55조(출입·검사 등) ① 국토교 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 자등, <u>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u> 또는 <u>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u>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 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이나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
하는 자가 제2항에 따라 소멸
시효가 완성된 사용료를 공항
계정에 귀속시키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
<u>수할 수 있다.</u>
법률 제20291호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
제55조(출입·검사 등) ①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 또는 제
3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용료
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
는 항공권판매자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69조(과태료) ①

부과한다.

1. · 2. (생략)

<신 설>

3. ~ 6. (생략)

②·③ (생 략)

\_\_\_\_\_

1. • 2. (현행과 같음)

2의2. 제32조의2제3항을 위반하 여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사용료의 반환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해당 사용료를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을 미리 통지하지 아니한 공 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 리・운영하는 자

3. ~ 6.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